##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2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한정애・이기헌・조계원

전현희 • 윤후덕 • 권칠승

이재정 • 박홍근 • 주철현

오세희 • 박희승 • 이광희

정성호 • 이재강 • 김준형

김영배 · 문금주 · 황정아

장종태 · 조인철 · 추미애

김주영 • 이용선 • 전진숙

이워택 • 한민수 • 신정훈

박지원 · 양부남 · 문진석

박홍배 • 권향엽 • 민홍철

김태년 · 양문석 · 송옥주

서영석 · 정춘생 · 김민석

한병도 의원(40인)

### 제안이유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섯 차례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활동한 끝에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음. 또한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1945년 8월 22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우고 부산으로 귀국 중이던 우키시마호가 침몰하면서 수천명의 한국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승선자 명부가 일본측으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피해조사 및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가 지난 9월 한국인 승선자 명단 일부를 확보함에따라 이들 뿐 아니라 추후 확보되는 승선자 명부 등을 통한 우키시마호 침몰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할 필요가 상당함.

한편, 2016년 일본이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며 2024년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향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 하여 수행하도록 함.

또한 희생자 유해에 대한 신원 판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등 현행제도를 정비·보완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징용 소송 제3자 변제를시행하는 등 설립 취지에 반하는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재단의 사업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등).

나.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다.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 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0년 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9조).
- 마. 위원회 존속기한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을 삭제하고, 존속기한에 맞추어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며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 바.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
   ·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
   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사.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재단의 사업을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함(안 제8조 및 제37조).

자. 벌칙의 벌금 액수를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2천만원"에서 "5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나아가"를 "그 왜곡행위에 대응하며 나아가"로, "국외강제 동원"을 "강제동원"으로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강제동원 희생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를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에"로, "국외강제동원"을 "강제동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를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를 "강제동원 생환자"로,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사람 또는 국내로 강제동원되었던 사람 중 강제동원 희생자"로, "국

외강제동원 생환자로"를 "강제동원 생환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를 "강제동원되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강제동원"을 "강제동원"으로, "제8조제3호 및 제6호"를 "제8조제3호·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강제동원"을 "강제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를 각각 "강제동원되어"로, "국외강제동원"을 각각 "강제동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을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국외강제동원"을 각각 "강제동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각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외강제동원"을 "강제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를 "강제동원 생환자 및 그 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외강제동원"을 "강제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2의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왜곡(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자·노무자·위 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 쓰는 것을 말한다) 대응에 관한 사항
- 1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 1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의 제목 중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2015년 6월 30일까지"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6개월"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존속기간이"를 "존속기한이"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유전자검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전문성과 공신력을 구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서 제출 절차, 자료의 보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피해진상 재조사)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제25조에 따른 피해판정 불능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

로 재조사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2014년 6월 30일 이내에"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 위원회"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이 법으로 다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한다.

제4조(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 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ㆍ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에 관한 특별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제1조(목적)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	
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u>나</u>	<u>⊐</u>
<u>아가</u> 1965년에 체결된 「대한	왜곡행위에 대응하며 나아가
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	
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	
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u>강제동원</u>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	
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	
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	3. <u>강제동원 희생자</u>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	가

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

동원되어 그 기간(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에
강제동
<u>원</u>
나
강제동원되어 그 기
간(국외로 강제동원된 사
람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

#### 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생략)

-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 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장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

	는 과정의 기간을 포함한
	다) 중에
	다. (현행과 같음)
4	<u>강제동원 생환자</u>
••	
	<u>사람 또는 국</u>
	내로 강제동원되었던 사람
	중 강제동원 희생자
	<u>강제동원 생환</u>
	<u> 자로</u>
5.	
J.	
	<u> 강제동원되어</u>

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 저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u>국외</u> <u>강제동원</u>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제8조제3</u> 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1. ~ 4. (생략)
- ② · ③ (생 략)
- ④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 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 제4조(위로금) 국가는 <u>국외강제동</u> 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 로금을 지급한다.
  -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u>강제</u> 동원
<u>0 t:</u>
<u>호·제6호 및 제7호</u>
<ol> <li>~ 4. (현행과 같음)</li> <li>② · ③ (현행과 같음)</li> </ol>
4
대 <u>일항쟁기강</u> 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국
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제4조(위로금) <u>①</u> <u>강제동원</u>
1. <u>강제동원되어</u>

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u>국</u> 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 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 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 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 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 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2. <u>국외로 강제동원되어</u>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u>국</u> <u>외강제동원</u> 희생자 1명당 2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 ② 제 (생 략) <u><신 설></u>

<u>강</u>
제동원
2. <u>강제동원되어</u>
<u>장</u>
<u>제동원</u>
② 국가는 강제동원생환자 또
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
한다.
 5조(미수금 지원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미수금 지원금 산정 시 물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u>국</u> <u>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u> <u>또는 국외강제동원</u>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 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 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 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한다.

#### ② (생략)

-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u>국외강제동원</u> 희생자, <u>국외</u> <u>강제동원</u> 생환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 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u>가상</u>	-승극	률 등	을	고라	할	필요	<u> 가</u>
	<u>있다</u>	-고	인정	되는	= 75	月우 c	세는	대
	<u>통령</u>	렁,	으로	정ㅎ	누는	7] {	존에_	따
	<u>른</u>	금 ¢	백을	추기	·로	지급	급할	수
	있다	<u></u>						
제	6조(	의호	로지워	년금)	1			- <u>강</u>
	제동	-원	희생	자 ·	중 시	생존	자 모	는
	<u>강제</u>	동	<u>원</u>					
	2 (	현	행과	같음	)			
제	7조(	위크	로금등	등 지	급으	] 저	외)	
	1.	<u>강</u>	제동의	<u> 원</u>			<u>Z</u>	<u>}제</u>
	<u>동</u>	<u>원</u> -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 족행위를 한 경우

2. ~ 4. (생 략)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 |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 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 |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사 • 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 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 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 원위원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왜 곡(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 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 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 무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 쓰는 것을 말한다) 대응 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 7. <u>국외강제동원 생환자</u>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8. <u>국외강제동원</u>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 한 사항
- 9. 10. (생략)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u>존속기간 및 조</u>사기간 등) ① 위원회는 <u>2015</u> 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u>6개월</u>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u>강세당원</u>
7. <u>강제동원 생환자 및 그 유족</u>
8. <u>강제동원</u>
U. <u>० भा ० स</u>
9. • 10. (현행과 같음)
1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
<u>사업</u>
1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
· 연구 사업
<u>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
제19조(위원회의 <u>존속기한</u> ) ① -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
<u> </u>
3 <u>년</u>
•

- ②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삭 제> 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 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 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 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 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 료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 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 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 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신 설>

3		<u>제1항에</u>	따른	기한
4				<u>존</u>
<u>속</u> 기	기한이			

제23조의2(유전자검사) ① 위원회 는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 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 •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 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 정 불능결정)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 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 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 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 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과 공신력을 구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④ 그 밖에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서 제출 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 정 불능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u>재조사할 수 있다.</u> <신 설>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위로금등의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3조(소멸시효 등) ① 위로금 저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

<u>제</u>	253	조 🌣	12(	피	해진	인정	}-	재 :	조시	+)	위	원
	회	느	제;	222	돈어		叫	른	긱	하	결	정 <u>,</u>
	제2	24 <i>3</i>	<u> </u>	u	<b>구른</b>	. 7	7] 2	각길	별정	Į Į	및 곳	제
	<u>253</u>	조이	]	따	르	피	해	판.	정	불	능	·결
	<u>정</u>	(ه	후	디	비일	항	쟁	7]	7	ㅏ저	동	·원
	<u>피</u>	해들	1 3	증명	g 할	٠ ح	<u>수</u>	있	는	사	로	.운
	<u>자</u>	료フ	}	발기	<u> 견돈</u>	]	경	우	IJ	하	신	고
	<u>인</u>	또	는	진	상:	조/	나	신	청	인의	의	<u>신</u>
	<u>청</u>	케	따	르 /	거니	<u> </u>	직	권.	<u>o</u> i	로	재	<u>조</u>
	<u>사</u>	할	<u>수</u>	있	<u>다.</u>							
제	273	조(-	위크	2금	능	의	ス	급	ر ا	·] 청	3)	1
	(현	행.	과	같-	음)							
	2											

②
이 법 시행일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u>.</u>
③ · ④ (현행과 같음)
∥33조(소멸시효 등) ①
017 21
<u>3년간</u>

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 으로 소멸한다.

② (생략)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 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 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 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 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다.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 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 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 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 강제동원피해조사 · 왜곡대응및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삭 제>

<u>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u> 조할 수 있다.

-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 구 사업
- 4. 그 밖의 관련 사업

제42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지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 · 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제42조(벌칙) ①
5천만원
② ~ ④ (현행과 같음)